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주체 합의 규정 신설〉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2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주체 합의 규정 신설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9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개발사업자인 공공기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3조 등).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주체 합의 규정 신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지방공기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 사항·개선명령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 사항·개선명령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하여 그 소유권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넘기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⑧ -----제7항----- -----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⑧ ~ ⑩ (생략)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③ (생략)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 ⑪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제53조 제7항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8조(벌칙)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53조제8항----- ----- ----- -----
13의2. ~ 17. (생략)	13의2. ~ 17.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비점오염 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음.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⑩ (생략)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동 조항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2024년 12월 기준 총 4,346개소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2,498개(57.4%), 폐수배출 사업장 1,848개소(42.6%)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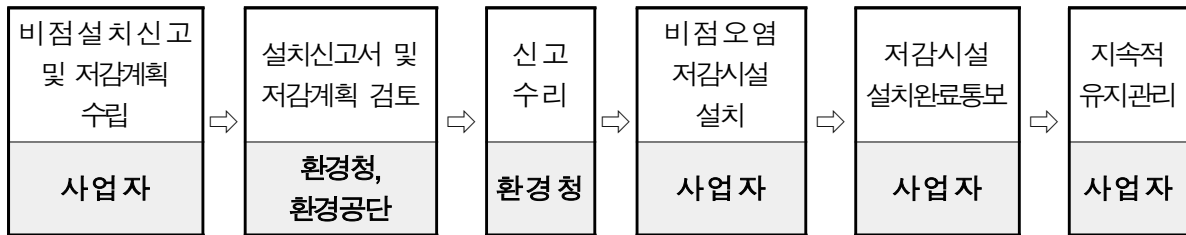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전북청	대구청	원주청
계	4,346	843	719	953	370	378	513	570
영향평가 사업장	2,498	580	530	410	261	143	299	275
폐수배출 사업장	1,848	263	189	543	109	235	214	295

자료: 환경부

한편, 개발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저감계획서를 신고하여야 하고, 지방·유역 환경청에서 이를 검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함.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 절차]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이 지자체로 이관되는데, 지자체 예산 미확보시 관리 부실이 우려되므로 인계인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²⁾, 인계인수 과정에서 기술 및 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담당자 지정, 인계인수 시 시설의 변경 신고 이행사항, 유지관리 사항 점검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³⁾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공개발사업 시행 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자체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신고서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한편, 사전 협의 관련 내용은 환경부 고시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에 이미 존재하므로, 동 규정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의의도 있을 것임.

2) 최종수·이정민·이승재(2017), 「개발사업에 대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0p

3) 경기연구원(20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지침 연구」, 44p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1>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은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가.~나. (생략)

다.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자와 유지관리 주체가 사전에 유지관리계획을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제시한다.

다만, 개정안은 ‘공공개발사업 사업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개발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환경부 및 경기도 의견이 제출된 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사업법례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은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유사업법례 : 물재이용법]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 도시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 중 도시개발사업은 **410개소**(‘24년말)이며, 204개 사업이 수도권지역에서 추진됨(약 49.8%)
- 도시개발 등 공공개발사업은 사업 준공이후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이관받아 유지관리 실시 중**

※ 수도권외 지역은 사업준공 이후 시행자-지자체간 인계·인수가 원활히 진행되나, 수도권 일부사업의 경우 운영부서 선정,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계·인수시 갈등 발생

<도시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현황>

구분	계	신고자(대표자) 현황			
		지자체	공사 (주택공사, 도시공사 등)	개발조합	기타 (학교장, 업체 등)
계	410	107	144	71	88
수도권	204	22	101	35	46
수도권외	206	85	43	36	42

□ 수도권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기관 변경현황

순번	사업명	신 고 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 후		
1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시장	‘06. 8	‘16. 9
2	송도국제도시 센트럴 공원	송도신도시개발(유)	인천광역시장	‘06. 8	‘10. 6
3	군포당동2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시장	‘06. 8	‘19. 6
4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시장	‘06. 8	‘14.12
5	수원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시장	‘06. 9	‘16. 8
6	성남여수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장	‘06.10	‘10.8
7	안양 관양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양시장	‘06.10	‘16. 4
8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장	‘07. 2	‘16. 8
9	고양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고양시장	‘07. 2	‘16.10

순번	사업명	신 고 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 후		
10	김포 한강지구 택지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시장	‘07. 4	‘19. 5
11	화성 향남2지구 택지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시장	‘07. 5	‘22.11
12	평택소사벌지구 택지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시장	‘07. 5	‘16. 5
13	양주 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시장	‘07. 7	‘16.12
14	시흥목감지구 택지개 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장	‘07. 8	‘18. 1
15	중동(동진원) 도시개발 사업	중동도시개발조합	용인시장	‘09. 8	‘13.11
16	용인 남사(아곡) 도시 개발사업	용인남사 도시개발 사업조합장	용인시장	‘09.12	‘18.10
17	고양원흥 공공주택지 구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시장	‘09.12	‘18.12
18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시장	‘09.12	‘24. 3
19	김포 감정1지구 도시 개발사업	감정1지구 도시개발 사업장	김포시장	‘10. 8	‘20. 2
20	도화구역 도시개발사 업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0. 8	‘19. 5
21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평택시청	‘10. 9	‘24.10
22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수원시장	‘10. 9	‘16. 8
23	서울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서울특별시 SH공사	강남구청	‘10.12	‘24.5.
24	풍무 5지구 도시개발 사업	풍무5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김포시장	‘10.12	‘19.11
25	의정부 경기북부 광 역행정타운 1,2구역 도시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시장	‘11. 3	‘16. 4
26	김포풍무2지구 도시 개발사업	김포풍무2지구 도시 개발사업조합	김포시장	‘11. 3	‘22. 8
27	서울항동 보금자리주 택지구 조성사업	서울SH공사	서울시 구로구청장	‘11. 4	‘23.10
28	평택용죽 도시개발사 업	평택용죽 도시개발 사업조합	평택시장	‘11. 4	‘18. 5
29	인천 구월 보금자리 주택지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남동구청장	‘11. 5	‘17. 3
30	역북지구 도시개발사 업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장	‘11. 5	‘21. 4
31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시장	‘11.8	‘24.5

순번	사업명	신 고 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 후		
32	평택 세교지구 도시 개발사업	세교지구도시개발조 합장	평택시장	‘12. 2	‘21. 7
33	마곡구역 도시개발사 업	서울SH공사	서울시 강서구청장	‘12. 3	‘21. 7
34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업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2. 4	‘19. 5
35	안성아양지구 택지개 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성시장	‘12. 5	‘21. 1
36	부천 오정물류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시장	‘12.8	‘22.7
37	이천마장지구 택지개 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천시장	‘12.12	‘23. 4
38	하남시 지역현안사업 부지 2지구	하남도시개발공사	하남시장	‘13. 4	‘22.11
39	성남고등 공공주택지 구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장	‘13. 9	‘23. 5
40	평택 동삭2지구 도시 개발사업	사업조합	평택시장	‘14. 6	‘20. 3
41	황해경제자유구역 포 승지구 개발사업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평택시장	‘14.10	‘23. 8
42	의왕 장안지구 도시 개발사업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 투자 주식회사	의왕시장	‘15. 3	‘22. 4
43	하남미사 공공주택지 구 2단계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시장	‘15. 4	‘24. 3
44	김포 향산지구 도시 개발구역	김포향산도시개발사 업조합	김포시장	‘16.1	‘24.8
45	의왕 백운지식문화밸 리 도시개발사업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 투자 주식회사	의왕시장	‘16. 3	‘22. 4
46	평택신촌지구 주택건 설사업	아뮤티유한회사	평택시장	‘16.11	‘20. 5
47	김포신곡6지구 도시 개발사업	사업조합	김포시장	‘17. 1	‘22.12
48	김포 걸포3지구 도시 개발사업	사업조합	김포시장	‘17. 8	‘21.10
49	성남 판교대장 도시 개발사업	성남의뜰 주식회사	성남시장	‘17.12	‘23. 9